

피공제자 퇴직공제 근로일수 직접 신고 확인 결과 통지서(사업주용)

상호 또는 법인 명칭				대표자 성명				
사업장의 명칭								
사업장의 공제가입번호								
연번	피공제자		직접 신고 사유	근로연월	근로일수 (A)	사업주 신고 근로일수 (B)	차이일수 (A-B)	납부해야 할 공제부금
	성명	생년월일						
계								

※ 신고사유: 사업주의 미신고는 1로, 사업주의 잘못된 신고는 2로 표기합니다.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제3항 후단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제2항제2호에 따라 위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 귀 사업장에서 근로한 피공제자의 근로일수 직접 신고 확인 결과를 위와 같이 알려드리니, 차이일수에 상응하는 공제부금은 건설근로자공제회에 내야 하고, 공제부금을 내지 않으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26조제2항제7호).

년 월 일

건설근로자공제회

